

연구결과 초청 설명회 자료집 | 2009-4

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

한국농촌경제연구원

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

한국농촌경제연구원
연구위원: 박대식
초청연구원: 최경은

- 2008년 5월 기준으로 추계한 농촌(읍·면부)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 수는 28,240명
 -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‘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’를 바탕으로 도농복합시의 농촌인구 비율을 35% 정도로 추정하여 계산함.
- 2007년에 결혼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(7,930명) 중 40%에 해당하는 3,172명이 국제결혼을 함.
 -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건수는 베트남, 중국, 캄보디아 순임.
- 농촌(읍·면부)에 거주하는 400가구(농가)의 다문화가정(여성결혼이민자 400명, 남편 400명)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고,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은 20가구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 및 관찰을 실시함.
 -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조사지역은 전국의 43개 시·군 지역임.
 - 심층 면접조사 및 관찰 대상은 총 20가구이며 지역별로는 홍성 7가구, 거창 5가구, 김천 4가구, 옥천 4가구임.

- 국제결혼의 주요 동기를 살펴보면, 결혼이민자는 주로 경제적이며 능동적인 이유인 반면에, 한국인 남편은 수동적인 이유임.
 - 여성 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‘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(32.3%)’, ‘남편을 사랑해서(24.0%)’, ‘본국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(21.5%)’ 등임.
 - 한국인 남자가 국제결혼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‘혼기를 놓치고 결혼이 어려워져서(54.0%)’, ‘농촌으로 시집오려는 한국여성이 별로 없어서(25.3%)’ 등임.
- 농촌 다문화가정의 가구소득이 대체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들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은 본국생활과 한국생활의 상대적 비교 때문임.
 - 농촌 다문화가정의 절반 이상(53.4%)이 연간 가구소득이 ‘2,000만원 미만’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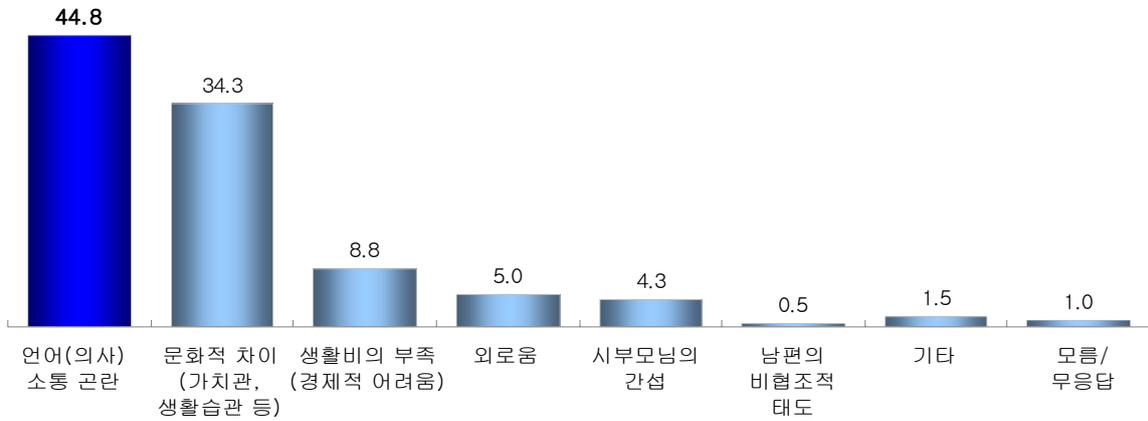
<연간 가구소득 분포(2007년)>

응답 범주	빈도	백분비(%)
1,000만원 미만	49	12.2
1,000~1,500만원 미만	66	16.5
1,500~2,000만원 미만	99	24.7
2,000~2,500만원 미만	114	28.5
2,500~3,000만원 미만	52	13.0
3,000만원 이상	19	4.8
잘 모름	1	0.3
계	400	100.0

- 결혼이민자들이 결혼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‘언어(의사)소통 곤란’과 ‘문화적 차이’임.

<현재 결혼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>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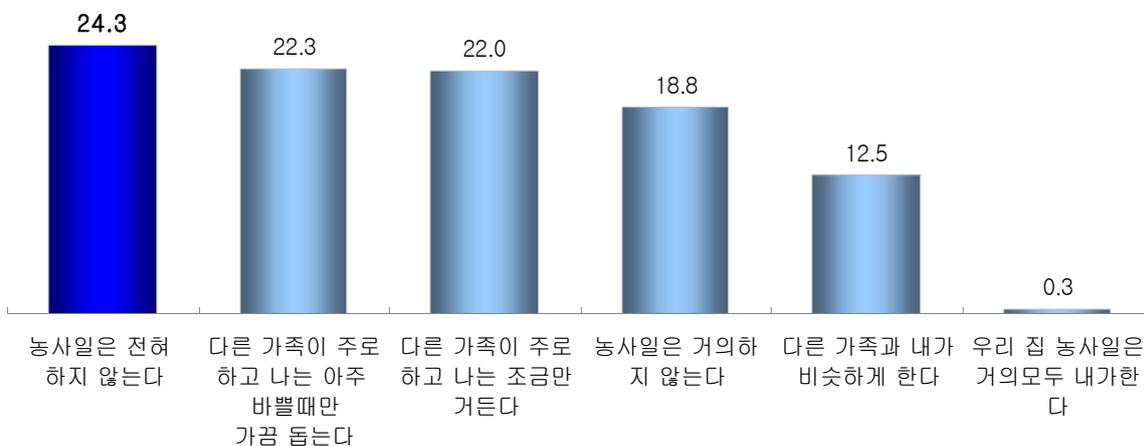
□ 농촌 다문화가정의 영농기반은 취약

○ 농촌 다문화가정의 3/4 이상(78.8%)이 농지(논·밭) 소유면적이 2ha 이하이고, 평균 농지 소유면적도 4,838평(1.6ha)에 불과

□ ‘농사일을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는다’는 결혼이민자의 비율은 43.1%로 나타남.

<농사일에서 결혼이민자의 역할 비중 인식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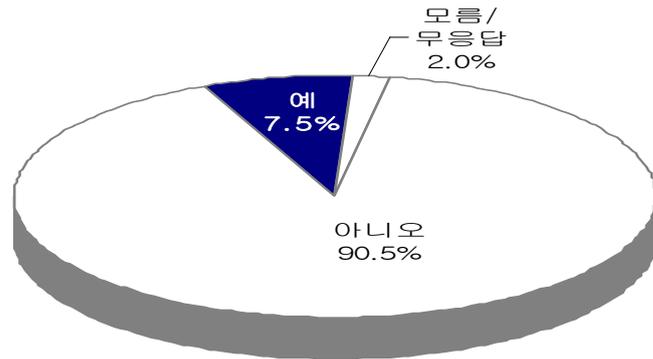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□ 결혼이민자의 7.5%가 비농업 분야에서 일을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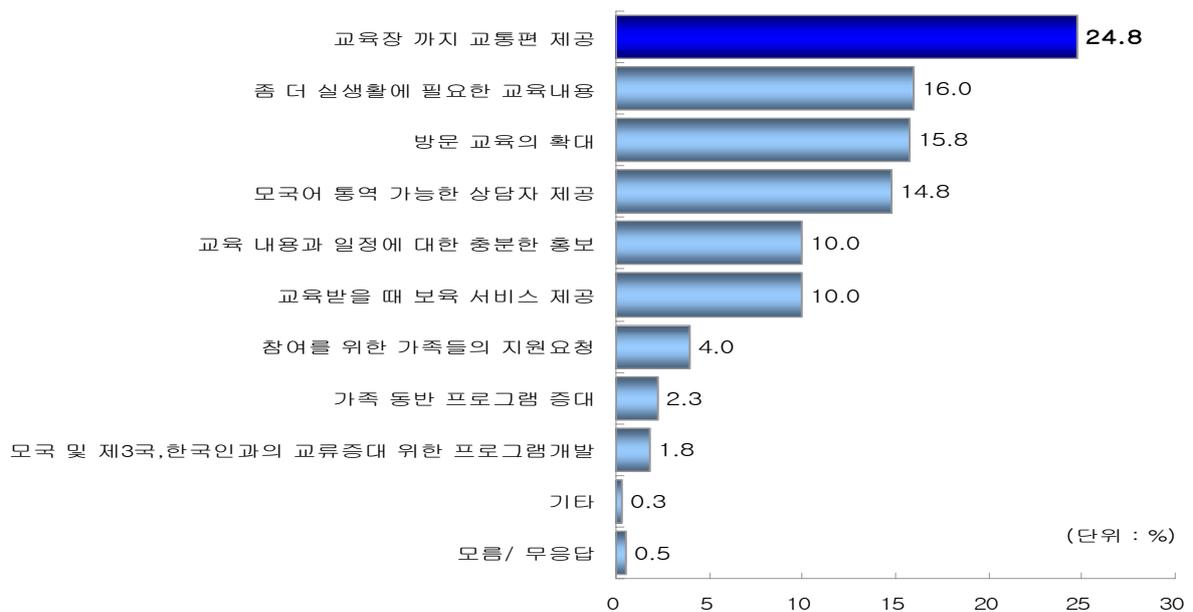
○ 주로 식당, 자영업, 어학강사, 생산직 분야에서 일을 함.

<결혼이민자의 비농업 분야 일 참여>



□ 결혼이민자가 사회서비스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한 것은 ‘교육장까지 교통편 제공’, ‘좀 더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 내용’ 등임.

<사회서비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>



□ 다문화가정 관련 지원정책의 문제점

- 정책 지원 대상과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여러 부처에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나,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로의 적응과 통합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고, 결혼이민자 및 자녀들의 사회기여에 대한 관심은 부족함.
- 농촌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부족함.
-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업들을 보면, 결혼이민자들의 특수한 경험과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기존의 일반여성이나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.
 -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와 요구에는 무관심한 채 한국인 가족들이 제기하는 요구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음.
 - 결혼이민자들의 고국 문화에 대해서 남편이나 자녀와 같은 가족들이나 주변의 한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부족함.

□ 농촌 다문화가정정책의 기본방향

- 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동화시키고 통합시킬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상호공존 해야 할 우리의 동료 및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는 다문화주의적 시각이 필요함.
-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주도의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.
- 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고국에서 체득한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.
- 각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점, 정책 요구사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함.

□ 주요 정책과제

○ 다문화가정 관련법의 개선

-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인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과 외국인으로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마련된 「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」은 다문화주의적 시각이 보충될 필요가 있음.
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위, 인권문제, 제도적 권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.
- 결혼중개업자의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은 의무 직업교육시간의 연장, 허위 정보 제공이나 허위·과장광고 등에 대한 처벌수준의 강화 등을 통해서 결혼이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되어야 함.

○ 농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이버 지원체계 구축

- 농촌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, 농협문화복지재단, 농촌희망재단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-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시·군별 인터넷사이트를 종합적으로 연계·관리하며, 지역사회 또는 인근 대학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함.
- 사이버 지원체계에서는 다국어(한국어, 영어, 일어, 중국어, 베트남어 등)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종 정보 제공과 상담 및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함.
- 사이버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해 시·군 사이트의 운영 성과에 따른 포상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○ 혼인 당사자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사전 교육 실시

- 결혼중개업자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국제결혼의 피해를 줄이

기 위해서 결혼이민 예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생활 및 혼인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·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.

- 국제결혼이민관 파견관제도(현재 베트남, 필리핀)의 대상국을 확대해야 함.
- 한국인 배우자 대상 결혼준비교육을 강화해야 하며, 이를 위해 교육이수자에게 각종 정부 지원에서 특별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○ 농촌 다문화가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

- 시·군 단위로 다문화가정 관련 공무원, 전문가, 결혼이민자 등이 중심이 되어 ‘다문화가정 지역협의회’를 구성하여 운영하되, 다문화가족지원센터, 농업기술센터, 농협, 시·군청, 지역 교육청, 지역 문화원, 학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.
-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높은 시·군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관련 전담인력 또는 전담부서를 배치하여 농촌의 다문화가정을 종합적·체계적 관리가 필요함.
- 보건복지가족부의 원스톱복지서비스(희망복지 129), 병무청의 사회복무제도와 연계하여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○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 모국어교육 강화

- 좀 더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서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되어야 하며,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구사할 줄 아는 강사를 확보하여 제대로 된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해야 함. 이를 위해 한국농촌에 정착하여 살고 있고 한국어에 능통한 동일 국가 출신의 선배 결혼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.
- 결혼이민자의 남편을 대상으로 아내나라 언어교육을 강화해야 함.

○ 다문화가정 대상 영농교육의 개선

- 결혼이민자 대상의 영농교육은 결혼이민자의 한국 적응단계별,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추진되어야 함.
 - 진입단계(0~3년)에서는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, 한국어교육, 생활문화정보 제공, 농업·농촌에 관한 기초상식 교육, 결혼이민자 본국의 문화 및 언어에 대한 가족교육, 임신·출산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함.
 - 정착단계(3~5년)에서는 우리 농업·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목표로, 본격적인 일반 영농기술교육 실시,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, 교육도우미 및 후견인 제도 강화, 아동양육 지원 등을 강화하고, 농기계 및 차량의 운전 및 안전 관련 교육을 중점 지원함.
 - 성장단계(5~10년)에서는 전문농업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, 품목별·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맞춤형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함.
- 영농교육은 결혼이민자의 영농경험, 기술수준, 학력, 영농기반, 영농활동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함.
- 결혼이민자의 영농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영유아 보육서비스 및 교통편 등을 제공해야 하며, 결혼이민자 대상의 농기계, 차량 등의 운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.
- 농산물가공, 농촌관광, 전자상거래 등을 자신의 남편이나 다른 여성 농업인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대상의 정보화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○ 영농기반 구축 및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

- 영농기반이 취약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유희농지, 임대농지 등을 알선해주고, 결혼이민자의 후계자 육성과 연계한 후계세대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이 요구됨.
-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농어업·농어촌의 사회적 역할 및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.

○ 농업 관련 산업 및 비농업 경제활동 지원

- 결혼이민자들이 보유한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.
- 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, 그들이 체득하고 있는 각종 요리법, 가공·저장법 등을 활용하여 부업(예: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)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- 결혼이민자들이 보유한 식품 및 음식 자원을 기반으로 ‘농식품 관련 산업’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함.
- 결혼이민자와 전문여성농업인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규 창업 관련 기술 및 경영 지도를 위한 멘토링제도를 운영하고, 직업능력 개발 및 창업 지원, 취업 상담 및 알선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○ 사회보장에서의 차별 해소 및 사회서비스 확대

- 결혼이민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사회복지사, 이장, 다문화가족센터, 여성농업인단체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, 자조모임 또는 다문화봉사대 등을 결성하여 지역사회 협력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.
- 남편 또는 부부 프로그램, 시부모 대상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함.
- 결혼이민자들이 교통 소외계층인 점을 감안하여 찾아가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함.
- 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역량을 사회복지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해야 함. 예를 들면, 농가도우미, 통역도우미, 요양보호사, 요리사, 상담보조원 등과 같은 영역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.
- 결혼이민자들의 복지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여 사회복지제도를 개선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.